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02
----------	------

발의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발 의 자 : 김인호 의원 (1명)

찬 성 자 : 박기재, 노승재, 경만선,
김춘례, 오한아, 황규복,
안광석, 송정빈, 이영실 의원
(9명)

1. 제안이유

- 유해물질인 마약의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중 식당 등의 메뉴판 등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청소년 등의 교육 및 정신건강에 이롭지 못함에 따라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문화의 조성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개정함.(안 제1조)
-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고,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충청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사항 : 개정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와”를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으로,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을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시의 책무)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제1조(목적) ----- <u>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u> ----- <u>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u>----- -----.</p> <p>제3조(시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시장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5조의2(광고물 등의 올바른 한글 표기 권고 등) ① <u>시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u></p>